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경상북도개발공사 —

2025. 6.



□ 처분요구일람표

1.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1
2.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불용품 처분 부적정 (주의)	7
3. 주택 임대계획 수립 및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장기 체납자 관리 소홀 (시정)	9
4.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11
5.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소홀 (주의)	15
6. 관급자재 분할구매 부적정 (주의)	17
7. 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용역 현장점검 지도·감독 업무 소홀 (시정)	20
8. 건설폐기물처리 업무 부적정 (주의)	24
9. 소규모 건설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26
10. 건설공사 원가 산정 부적정 (시정)	30
11.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주의)	34
12.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 소홀 (주의)	38
13.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주의)	41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징계에 관한 사항 및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징계양정 기준정비 등 미흡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2023.12.12., 행정안전부) ‘IV-2. 징계양정’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에 따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의결에 해당하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¹⁾ 등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도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률 등에 규정된 공익사업이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사무 등을 집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그 업무 수행에 공공성과 공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성 및 신뢰성 등이 요구되므로, 위 기관에서는 임직원의 비위에 대해 소관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비위의 유형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지원처에서는 2021. 8. 27.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²⁾되어 성 관련 비위 유형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공연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그 밖의 성폭력범죄 등에 대하여 별도 기준이 신설되었는데도,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9] 징계양정 기준에 성범죄 관련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유형에 가. 성폭력, 나. 성희롱, 다. 성매매, 라. 음주운전, 바. 기타로 분류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말함

2) 개정 이유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의 불법 촬영 등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을 신설하면서 해당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체계화 하고,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함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의2]에 규정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역시 내규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4. 12. 1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³⁾되어 음주운전 비위 징계기준은 ‘자전거등 음주운전’과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으로 구분하여 세부비위 유형(15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관에서는 2018. 1. 1. 신설하여 2019. 7. 29. 한차례 개정한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 9-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혈중알코올 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위 기관 내규에는 이보다 낮은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한 단계 낮게 정한 채로 2025.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소속 임직원의 성비위, 수당 부당수령, 음주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위 유형이 다른데도 동일한 징계처분이 나오거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징계처분이 낮게 나오는 등 징계양정 정비를 미흡하게 하여 징계처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 징계처분 및 징계의결 요구 업무 부당 처리

경상북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43조에 따르면 직원이 법령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며, 징계처분의 양정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46조의2에 따르면 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

3) 개정 이유: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자동차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신설함

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제46조의4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액의 1~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 [별표9]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정도 및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비규정」 제10조에서는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공무원여비규정」 제31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의2]에 따르면 여비 또는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부당수령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 수당이나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의 범위⁴⁾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소속직원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비위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4)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VI.초과근무수당 등'은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시간외근무 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급 AAA 등 5명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위를 적발하여 2024. 12. 26. 자체 특별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경영지원처에 통보하면서 ○○○급 BBB가 시간외근무 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취업규정」 제12조 등을 위반하고 시간외근무수당 75,4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는데도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고, ○○○급 AAA 등 5명이 초과근무수당 또는 출장여비를 부당수령 하였음에도 부당수령 금액 4,048,900원만을 환수조치 하였다.

또한 ○○○○○에서는 2024. 1. 10. 경상북도개발공사 인사위원회에 ○○○급 AAA과 BBB를 징계 요구하면서, AAA과 BBB가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를 수차례에 걸쳐 고의적⁵⁾으로 부정하게 수령하고, 그 금액도 100만 원 이상인 비위 (AAA 1,863,070원, BBB 1,603,200원)에 해당하는데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가 가능했던 징계부가금(부당수령액의 최대 5배에 해당) 역시 부과 의결요구를 하지 않았다.

[표] 경북개발공사 자체 특별감사결과 및 처분 내역

(단위 : 원)

처분요구일	적발내용	대상자	부당수령액		처분내용		비고 (횟수)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신분상	재정상	
계		5명	3,538,900	510,000	4명	4,048,900	
2024. 12. 26.	시간외근무자 복무관리 및 수당등 지급 부적정	○○○○ AAA	1,631,800	231,270	견책	1,863,070	15회
		○○○○ BBB	1,324,470	278,730	견책	1,603,200	12회
		○○○○ CCC	208,770		주의	208,770	3회
		○○○○ DDD	298,370		주의	298,370	4회
		○○○○ EEE	75,490		미처분	75,490	1회

※ 경상북도개발공사 ○○○○○ 처분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편집

5) 경상북도 개발공사 청렴감사실이 경영지원처에 통보한 처분요구서(청렴감사실-**8(**** ** **))에 따르면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신청·수령한 AAA과 BBB’라고 명시하고 사장(경영지원처장)에게 혐의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

그 결과 위 기관은 「취업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등을 위반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한 AAA, BBB, CCC, DDD, EEE에게 관련 규정에 명시한 징계 양정보다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부가금 부과결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의 실효성을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불용품 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전산시스템 정보보안 강화와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정보보안 솔루션 및 무정전 전원장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별표4]로 규정하고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부식성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 ○○○○○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가 노후되어 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후 배터리 예정가격 및 폐기방법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뒤, 해당 폐기물을 허가받은 정당한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 처분,

재활용)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처리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 4. 13. 무정전전원장치 수리 및 배터리 교체를 위해 14,080,000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날 무정전전원장치 수리와 배터리 교체 후 노후배터리 총 30개를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이화전기엔지니어링⁶⁾에게 방출하여 재활용 처분하였다.

[표] 무정전전원장치 수리 및 배터리 교체 현황

(단위 : 원)

연번	항목	세부 내역				거래처명	비고 (지급일)
		규격	수량	단가	금액		
	계				14,080,000		
1	무정전전원장치 수리	PCB, 콘덴서, FAN 등	1	4,510,000	4,510,000	AAA	2024. 4. 20.
2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12V 150AH	30	319,000	9,570,000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호 관련 편집

그 결과 지정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자가 매각 대금을 내고 처리하여야 할 노후 배터리가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처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터리 등 지정폐기물은 지정된 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AAA은 축전지, 전기장비 도매업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안 함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보수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방법은 내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규정시행내규」 제5조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우자 5만 원,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3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7) 제1호 배우자

제2호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제3호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제4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 ○○○○○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직계존속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거나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을 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직원 17명이 직계존속과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가족수당 부당 지급 내역

“개인정보로 비공개 처리”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직원의 부, 모를 대상으로 가족수당 8,074,82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는 「보수규정시행내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시고,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8,074,820원은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주택 임대계획 수립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장기 채납자 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료 수납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주택 임대계획 수립 부적정

경상북도개발공사 「주택임대규정」 제4조(임대계획) 및 「주택임대규정시행내규」 제2조(연간임대계획 수립)에 따르면 주택관리부서는 주택임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대목표량 및 자금 회수목표, 임대방법 및 임대보증금 등 결정, 주택관리방법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연간 임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 판매고객처에서는 주택임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대목표량 및 자금 회수목표, 임대방법 및 임대보증금 등 결정, 주택관리방법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임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 과 같이 공사 소관 공공임대주택 1,326세

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데도 2025. 5. 1. 감사일 현재까지 「주택임대규정」에 따른 임대계획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

[표 1] 공사 소관 공공임대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⁸⁾	세대수	공급수	공실수	비고
계	1,326	1,085	241	
행복주택	89	83	6	봉화춘양, 포항송도, 포항우현
통합공공임대주택	30	30	-	영양동부온단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869	869	-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338	103	235	경산역폴리비에, 경주아데리움 등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임대주택의 현황, 임대시기, 임대방법, 임대보증금 등이 부실하게 관리될 우려가 있다.

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장기 체납자 관리 소홀

경상북도개발공사 「주택임대규정시행내규」 제4조에 따르면 임대료의 계산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공사 지정금고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주거급여법」 제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은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연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분

체한 경우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 ○○○○○에서는 주거급여를 수급하고도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입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급여 수급 세대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장기관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여 장기 체납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위 기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2025. 5. 1. 기준)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총 70세대 50,552,720원 임대료, 764,360원 연체이자가 체납되고 있었고, 특히 3개월 이상 체납된 세대수는 총 31세대에 이르고 24,248,720원 임대료, 569,770원 연체이자가 체납되고 있는 등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2025. 5. 1. 기준)

(단위 : 호, 원)

구분	전체 체납현황			3개월 이상 체납현황			비고
	세대수	연체금액	연체이자	세대수	연체금액	연체이자	
계	70	50,552,720	764,360	31	24,248,720	569,770	
행복주택	5	1,327,670	12,250	2	1,034,680	10,700	
통합공공임대주택	3	339,400	1,800	-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8	45,259,490	663,000	27	19,654,850	471,760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4	3,626,160	87,310	2	3,559,190	87,310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는데도 주거급여 수급 현황 파악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체납액 해소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 ①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를 위하여 「주택임대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2019. 11. 13.부터 「정책연구용역관리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내규 제17조에 따르면 주관부서⁹⁾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1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내규 제23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 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4조에 따르면 총괄부서¹⁰⁾는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에서는 각종 정책연구용역 수행완료 후 품질 및 활용도 향상, 예산 효율적 집행 등 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 용역

9) 주관부서 : 연구용역 추진 담당부서

10) 총괄부서 : ○○○○○

결과 및 활용 현황 등을 용역 수행 부서에서 제출받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2년부터 총 18건(총 465,213천 원) 정책 용역심의를 심사한 후 용역 수행 부서로부터 3개월 이내 용역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용역 활용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기간 동안 단 1건의 정책 용역 평가도 하지 않는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 미이행 내역

“계약 정보로 비공개 처리”

그 결과 예산으로 수행된 정책연구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었지 점검되지 않거나 연구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정책연구용역관리내규」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활용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 분할구매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2022. 6월 ~ 2024. 12월까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과형강관)을 나라장터(총 9회, 1,207백만 원)를 통해 구매하였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 물품 공급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업체)로부터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의 납품업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달청 고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1회 납품 요구대상 구매 예산이 1억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려고 하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등 2단계경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1회 납품 요구대상 구매 예산이 총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구매 예산을 임의로 분할하여 2단계 경쟁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분할하여 2단계 경쟁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기관 ○○○○○에서는 “○○○○○ 건설사업 2단계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파형강관 구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는데도 분할하여 경영지원처에 계약을 요청하였고,

위 기관 ○○○○○에서는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분할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회피하였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금액 그대로 구매하였다.

[표] 관급자재 분할 발주 내역

“계약 정보로 비공개 처리”

그 결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다수공급자의 공정한 경쟁입찰 기회가 제한되었고, 2단계 경쟁을 실시하였을 경우 가능한 예산절감 기회가 상실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설계서 등을 확인

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임의로 2단계 경쟁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점검 지도·감독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등 2개 사업 및 그와 관련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

(단위: 백만 원)

과 업 명	과업내용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담당부서
○○○○○○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1,623	'24. 5. 24.~ '25. 9. 24.	AAA	○○○○○
○○○○○○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2,711	'23. 11. 14.~ '26. 1. 1.	BBB	○○○○○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편집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등¹¹⁾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고시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¹²⁾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현장시공실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벌점 부과 대상¹³⁾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 ○○○○○ 및 △△△△△에서는 ○○○○○ 증축사업 등 2개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회사로부터 각 전문분야의 기술지원기술인을 각 담당분야별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받았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현장점검 및 분기별 1회 합동점검 등 현장시공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등의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이 소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분기별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들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월별 및 분기별 현장시공 상태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지원기술인이

1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지시서 상의 업무범위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에 따른 기술지원기술인의 근무수칙 등이 기술되어 있음
13)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횟수가 2회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벌점 1점 부과, 1회 부족한 경우에는 벌점 0.5점 부과

참여해야 할 월별 현장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했는데도 공사관리관으로서 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23.11월 ~ 25. 3월)

(단위: 회)

연번	과업명	점검계획 (월1회)	분야별 기술지원 기술인 미참여 내역	용역사	담당부서
1	○○○○○○○	42	2	AAA	○○○○○
2	○○○○○○○	119	3	BBB	○○○○○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편집

그리고 아래 [표 3]과 같이 ○○○○○○ 등 2개 사업 관련해서는 공사관리관으로서 참여해야 할 분기별 현장점검에 참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공사관리관 합동현장점검 미참여 내역(23.11월 ~ 25. 3월)

(단위 : 회)

연번	용역명	계획 (분기별 1회)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담당부서
계	2건	9	9	
1	○○○○○○○	4	4	○○○○○
2	○○○○○○○	5	5	○○○○○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편집

그 결과 건설기술지원인, 공사감독관의 현장점검 등이 소홀히 이루어져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현장점검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폐기물처리 용역 현황

(단위 : 백만 원)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 금액	실준공일	실적 보고서 제출일	지연일수	담당자	해당부서
○○○○○	2022.07.25. ~ 2023.12.20.	-	2023.12.08.	2025.04.29.	481	AAA	○○○○○
○○○○○	2021.11.29. ~ 2023.07.31.	-	2023.07.28.	2025.04.29.	627	AAA	○○○○○
○○○○○	2024.03.11. ~ 2024.08.30.	-	2024.08.30.	2025.04.21.	220	BBB	○○○○○
○○○○○	2024.03.11. ~ 2024.08.30	-	2024.08.30.	2025.04.21.	220	BBB	○○○○○
○○○○○	2020.12.03. ~ 2023.08.31	-	2023.08.31.	2023.12.30.	122	CCC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같은 법 제2조 9호에 따른 배출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 등 2개 부서에서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처리 용역이 완료(실준공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배출 실적보고를 완료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생활관 신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총 5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완료하고서도 122일 ~ 627일 경과한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배출자와 처리자의 책임소재 및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 폐기물 배출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규모 건설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매입임대주택 보수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매입임대주택 보수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일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건설사업 관리자(감독)
			계	도급	관급			
2024. 8. 7.	매입임대주택 도배 장판 보수공사	인테리어 1식	-	-	-	2024. 08. 08. ~ 2024. 09. 05.	AAA	○○○
2024. 8. 7.	매입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실내건축 1식	-	-	-	2024. 08. 08. ~ 2024. 09. 05.	BBB	○○○

1. 공사계약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제1장 제1절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 공사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아래 [표 2]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도배 장판 보수공사”와 “매입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는 동일한 실내건축공사로 사업대상지 역시 동일하다.

[표 2] 매입임대주택 보수공사 사업내역 현황

공사명	매입임대주택 도배 장판 보수공사	매입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비고
사업내역	-	-	동일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에서는 위 사업들을 분할하지 않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이 동일한 주택 실내 보수공사를 2인 전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건의 공사로 분할 발주하여 2024. 8. 7.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인 수의견적으로 발주하였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던 다수

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2. 건설공사 사회보험 보험료 적용 부적정

경상북도개발공사 ○○○○○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소방서신축사업 부대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3] 소방서신축사업 부대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건설사업 관리자(감독)
		계	도급	관급			
○○○○○신축사업 △△△△△	가스설비 1식	-	-	-	2024. 04. 29. ~ 2025. 01. 18.	AAA	○○○
○○○○○신축사업 △△△△△	폐수처리 시설 1식	-	-	-	2024. 04. 08. ~ 2025. 01. 18.	BB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제1호에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법정 보험료인 고용보험료¹⁴⁾, 산업재해보상보험료¹⁵⁾, 국민연금보험료¹⁶⁾, 국민건강보험료¹⁷⁾, 노인장기요양보험료¹⁸⁾의 적용대상, 보험요율 및 적용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에서는 건설공사를 발주 및 계약을 하면서 법정 보험료가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에서는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신축사업 △△△△△”, “○○○○○신축사업 △△△△△” 관련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를 미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14)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제외

15) 모든 건설공사

16)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17)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18)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그 결과 반영되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반영되지 않고 건설공사가 추진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공사 또는 단일공사를 임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고, 30일 이상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원가 산정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경북도청 ○○○○○○(2단계) 조성공사”등 3건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시군	읍면동		계	도급	관급		
경북도청○○○○○ ○(2단계) 조성공사	-	-	택지개발 5,807,878㎡	-	-	-	2017.12.29. ~ 2025.12.31.	AAA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조성공사 △△△△	-	-	택지개발 내 가로등 설치 등	-	-	-	2022.04.01. ~ 2025.12.31.	BBB
○○○○○행정문화 복합플랫폼 및 통합공공 임대주택건립사업 (시설공사)	-	-	임대주택 30호	-	-	-	2023.10.31. ~ 2025.12.13.	CCC

1.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변동액 반영 부적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 공사 금액을 말한다.)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발주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정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7개 항목(이하 “간접공사비”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실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2개 부서에서는 “경북도청 ○○○○ ○○(2단계) 조성공사”등 총 3건의 사업을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간접공사비는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지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간접공사비의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실비 정산 대상 금액은 물가변동 조정대가에서 제외하고 계약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실비 정산항목인 국민건강보험료 등 간접공사비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191,477천 원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산정하였다.

[표 2]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변동액 반영 현황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물가상승분 반영액	정산항목 제외 물가상승분 반영액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액
계		5,098,253	4,906,776	191,477
△△△△△	경북도청○○○○○○○(2단계) 조성공사	4,317,600	4,183,500	134,100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	487,653	449,917	37,736
△△△△△	○○○○○행정문화복합플랫폼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시설공사)	293,000	273,359	19,641

그 결과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191,477천 원이 감액되지 않고 설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 공사원가 과다 계상 및 정산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에서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경북도청 ○○○○○○(2단계) 조성공사” 관련 발주자용 가설사무실 비품을 과다 계상하여 11,00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반영되어 있는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가설사무실 비품 등 불필요한 금액(11,000천 원)이 과다 계상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국민연금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및 가설사무실 비품 등 과다 계상된 금액 202,477천 원은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 ○○○○○19)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소방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제작·설치용역”에 대한 수탁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용역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계약금액 (변경)	계약자	계약일	용역기간	용역내용
○○○○○소방 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제작·설치용역	- (-)	AAA	22.05.11.	22.05.11. ~ 24.03.30.	소방안전체험관 체험전시물 관련 일체 제작 및 설치 (체험실 인테리어, 체험교육용 영상물 제작, 체험프로그램 계획 등)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편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

19) 업무이관(2024. 1. 1.) : ○○○○○○ → ○○○○○○

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7절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에서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용역의 경우에 한하여²⁰⁾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후 과업의 이행 과정에서 제안서를 토대로 체험시설물 제작설계 및 성과품 도서를 작성하고 단순 누락 사항을 제외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소방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제작·설치 용역”에 대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내부 전시시설 제작·설치의

20) 공사분야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폐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6. 9.13. 개정)

사유로 용역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체험전시물 제작·설계 등 성과품 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 산출내역서²¹⁾를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로 변경하여 설계 변경하였다.

또한 계약상대자인 AAA에서 제출한 공사 내역서를 품셈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가검토기관에 의뢰한 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당초 변경내역서 대비 사업비 12,575천 원을 부적정하게 추가 증액하였다.

【표 2】 용역 변경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변경일)		계약금액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증 감	
계				증 91,822	
1회 변경 (23.08.09.)	내역서 변경	531,777	578,700	46,923	· 산출내역서 변경(용역 → 공사) · 과업의 변경 및 추가 - 천장루버 설치 변경 (일반 → 내진천장틀 변경 등) - 체험실 위치 및 면적 변경 - 체험시설물 사양 및 체험방법 변경 - 화재체험실 급수방식 변경 등 (직수 → 물탱크설치)
	원가검토	578,700	591,275	12,575	· 원가검토 결과 반영 -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수량 및 단가 조정
	소계			59,498	
2회 변경 (24.03.27.)		591,275	650,375	59,100	· 과업추가 - 체험관 내 사인물 신규 추가 및 규격 변경 등
준공정산 (24.04.18.)		650,375	623,599	△26,776	· 보험료 등 정산 -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편집

그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 용역이 공사로 변경되어 설계변경 되었고,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비 12,575천 원이 부당하게 증액되어 집행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21)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세부공종별로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등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서류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신축사업 건립 시설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시군	읍면동		계	도급	관급		
○○○○○ 신축사업 건립 시설공사	-	-	연면적 3,951.46㎡	7,913	5,595	2,318	2023.05.24.~ 2025.01.18.	AAA
○○○○○ 리모델링 공사	-	-	연면적 1,163.01㎡	576	482	94	2022.08.02.~ 2022.11.29.	BBB
○○○○○건립사 업 잔여공사	-	-	행복주택 49호 (우현 29, 송도 20)	1,670	16,45	25	2023.04.10.~ 2023.12.25.	CCC
○○○○○ 생활관 신축사업 사면보강공사	-	-	계단식옹벽 L=24m	173	173		2024.11.08.~ 2025.07.02.	DDD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 등 2개 부서에서는 “○○○○○ 신축사업 건립 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사업자가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위 사업 관련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품질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질 우려가 있게 되었다.

2.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미만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에서는 “○○○○○ 신축사업 사면보강공사”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미만인 공사이므로 공사착공 전일까지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위 사업 관련 착공 전일까지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가 소홀히 이루어지는 등 건설 산업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 ○○○○○²²⁾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 보수를 하는 등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22) 업무이관(2023. 1. 1.) : ○○○○○○ → ○○○○○○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에 참관해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에서는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하자검사 대상 시설공사 총 11건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는데도 연 1회만 하자검사를 하였다.

[표]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일	하자보증내역		비고
					공종	기간	
1	○○○○○	168,059	코오롱	20.05.29.	미장타일 도장 등	20.05.29.~22.05.28.	
2					창호설치 등	20.05.29.~23.05.28.	
3					철근콘크리트, 석공사 등	20.05.29.~25.05.28.	
4					내력구조부	20.05.29.~30.05.28.	
5	○○○○○	5,792	(주)신화건설	23.07.28.	내력구조부	23.05.09.~28.05.08.	
6					방수 등	23.05.09.~26.05.08.	
7					석공사·조적 등	23.05.09.~25.05.08.	
8					미장·타일, 창호설치 등	23.05.09.~24.05.08.	
9					보일러설치	23.05.09.~24.05.08.	
10					급배수·냉난방 등	23.05.09.~24.05.08.	
11					관로매설 등	23.05.09.~26.05.08.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하자담보기간 내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등 하자담보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검사 등 하자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